

청주지방법원 2024. 10. 22 선고 2024가단5438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변 론 종 결 2024. 10. 8.

판 결 선 고 2024. 10. 22.

주 문

1. 원고에게, 피고 B, C, D, E, F은 각 7/42 지분에 관하여, 피고 G는 3/42 지분에 관하여, 피고 H, I은 각 2/42 지분에 관하여, 충북 진천군 J 대 397㎡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㉠부분 시멘트벽돌 양철지붕 주택 56.73㎡,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㉡부분 부속건물 21.41㎡, 별지 도면 표시 9, 10, 11, 12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㉢부분 부속건물 3.67㎡를 각 철거하고 그 각 대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다만,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철거 및 인도할 것을 구하고 있다.)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충북 진천군 J 대 397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.)의 소유자이다. 나. 망 K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㉠부분 시멘트벽돌 양철지붕 주택 56.73㎡,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㉡부분 부속건물 21.41㎡, 별지 도면 표시 9, 10, 11, 12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㉢부분 부속건물 3.67㎡(이하 ‘이 사건 각 건물’이라 한다.)를 각 소유하고 있던 중 2012. 7. 11. 사망하였다.

다.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 중, 피고 B, C, D, E, F은 각 7/42 지분을, 피고 G는 3/42 지분을, 피고 H, I은 각 2/42 지분을 각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.

[인정근거] ① 원고와 피고 1, 3 내지 8 사이 :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, ② 원고와 피고 2 사이 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2. 이 법원의 판단

가. 공동상속인들의 건물 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로서 각자 그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한다(대법원 1980. 6. 24. 선고 80다756 판결 등 참조).

나. 따라서 원고에게, 피고 B, C, D, E, F은 각 7/42 지분에 관하여, 피고 G는 3/42 지분에 관하여,

피고 H, I은 각 2/4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각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송경근

별지